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4. 22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13명(배지훈, 김태형, 이신자, 김인호, 조복희, 김기열, 서민우, 박정환, 배용식, 이영빈, 안영란, 원종진)
- 발의일자: 2020. 3. 23.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0. 4. 22.)

2. 개정이유

-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본이념 신설(안 제2조)
-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기준 신설(안 제18조)
- 평가결과의 통보 등 신설(안 제21조)
- 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신설(안 제22조 제4항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「폐기물관리법 제14조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3. 23. ~ 2020. 4. 3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김휘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서 「평가점수」를 좀 더 구체화하고, 「평가결과의 통보와 공개」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와 달서구의 청소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집행부의 수정 의견인 개정안 제9조 제2항 일부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됨으로 제9조 제2항 「하단부」 삭제 · 수정과 평가위원회의 「약칭」 통일, 「장」 구분에 대한 사항은 반영의 필요성이 있음.
그 외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인 개정안 제22조 제4항의 삭제 여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요지: 집행부 수정의견 일부반영

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앞에 “제2장 평가절차”를 삭제하고, 안 제7조 앞에 “제2장 평가절차”를 삽입한다.

제11조 앞에 “제3장 위원회 구성”을 삭제하고, 안 제12조 앞에 “제3장 위원회 구성”을 삽입한다.

제18조 앞에 “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”을 삭제하고, 안 제20조 앞에 “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”을 삽입한다.

안 제9조제2항 전단 중 “실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21조제1항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평가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정안	위원회 수정안
제8조(평가의 실시) ① 구 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	제9조(평가의 실시) ① ----- 제7조 및 제8조----- ----- ----- -----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	제9조(평가의 실시) ①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 ----- ② -----

<p>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,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	<p>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,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<u>실시하고</u>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	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8조(평가의 확정) ①</p>	<p>제18조(평가의 확정) ①</p>
<p>평가위원회는 각 평가 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</p>	<p>평가위원회는 각 평가 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</u></p>	

	<p>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.</p>	
<u><신 설></u>	<p>제21조(평가결과 통보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(평가결과 통보 등)</p> <p>① ----- 위원회 -----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 위원회의 -----</p>